
울산시민가상발전소-20-01 사업규약

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규정된 사항들에 기반하여 “사업”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“사업규약”으로 정리하여, 총회를 통해 의결하고 공포한다.

- 사업명 : 울산시민가상발전소-20-01 사업 ('20년도 1차사업, 이하 “사업”)
- 건물옥상, 주차장등에 태양광설치, 20년장기고정계약으로 전력시장에 판매함.
 - 조합과 동서발전이 50%씩 공동 투자 후, 발전사업은 조합이 수행하고, 동서발전은 이를 전력중개시장에 거래하는 구조로 사업의 안정성을 높임.
 - 총 발전용량 1,500MWp 개별설치 최소10kW이상(60m² 이상)
 - 총 사업비 : 2,987,000천원 (조합 746,750 / 동서발전 746,750 / 보조금 1,356,000)
 - 조합자금 조달방식 : 조합원출자금 225,000천원, 금융조달 521,750천원
 - 사업기간 : 구축 '20/04~'20/12, 운영 '21/01~'40/12
 - 사업성(예상)¹⁾ : 매출 6,788백만원 (옥상임대 1,523 / 운영관리 1,489 / 보험료 282 / 금융비 1,437 / 제세금 28 / 조합수익 1,014 / 동서발전수익 1,014)
 - 설비는 20년간 상업운전 후 옥상주에게 기부채납 함(이후 요청시 위탁운영함)

제1조 (배경 및 목적) ①조합은 (주)에이치에너지(주관사), 한국동서발전(주), 울산광역시와 컨소시엄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‘20년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지원 사업 협약(이하 “지원사업협약”)을 체결하였다.

○ 사업명 : 지역거점 시민가상발전소 구축사업(이하 “에너지공단 사업”)

- ② “지원사업협약”에 후속하여 “에너지공단 사업”에 참여하는 수행기관간 권리 및 책임을 규정하는 수행기관간 협약서(이하 “수행기관협약”)을 체결하였다.
- ③ 본 “사업”은 조합이 “에너지공단 사업”에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이며, “수행기관협약”을 기본으로 하여, 사업의 세부규약을 정의한다.

제2조(출자) ① 조합원은 최소 1구좌를 출자 하여야 한다.

-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한다.
- ③ “사업”에 소유한 옥상을 임대하는 조합원에게는,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 최소 10구좌 납입을 보장하며, 매 100kW 초과시 매다 추가 10구좌를 보장한다. (즉, 10kW ~ 100kW까지는 10구좌, 101kW ~ 200kW는 20구좌 최소 보장함. 해당 옥상주가 원 할 경우 - 해당 조합원은 그 이상, 또는 그 이하를

1) 부담금의 약 70%를 금융조달(4.3%)하고, 동서발전은 자체 방식으로 조달하지만, 편의상 조합과 동서발전 모두 조합방식의 금융조달로 가정함.

신청할 수 있지만, 최소 구좌납입을 보장한다.)

- ④ 일반시민 조합원의 출자한도는 5구좌로 한다.
- ⑤ 일반시민 조합원 비율을 최소 30% 이상 보장한다.
- ⑥ 모든 출자한 조합원에게는 조합원펀드 가입을 보장한다.
- ⑦ 본 조 3항과 4항에도 불구하고 모집 미달 될 경우에는, 2항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한 출자금액을 모두 받기로 한다.

제3조(잉여금배당, 재투자 및 출자금전환) ① 조합은 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 적립, “수행기관협약서”에 명시된 에너지복지기금 기부 후 조합원 출자금의 8%를 배당키로 한다. 부족한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되어 지급키로 한다.

② 배당 후 남는 이익잉여금은 후속 확산사업에 투자하여 조합원 수익을 극대화 한다. 이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수익, 연간 지분의 변화, 탈퇴시 확급금은 사업계획서에 명기한다.

③ 이때 투자된 금액은 조합원 출자금에 합산키로 한다. 단, 사업별로 추가된 출자금을 구분하고 배당규칙 또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제4조(사업비 조달) ① 조합은 조합분담금중 최소 225,000천원(30%)을 조합원 출자금으로, 그 나머지 521,750천원(70%)를 금융 조달키로 한다.

② 금융조달은 조합원 펀드(차입금)을 1순위로 하며, 신탁 포함한 외부 금융대출을 2순위로 진행한다.

③ 조합원펀드는 3년 만기, 금리 4.3%로 하며 약정이자는 ‘21년 3월부터, 분기 단위로 지급키로 한다.

제5조 (계약, 운영 등) ① “사업”은 구축, 운영, 관리, 판매 및 정산에 대한 제반사항은 “수행기관협약”을 따른다.

제6조(지분의 범위 및 변동) 본 사업설비는 감가상각정액법에 의해 20년간 상각한다. 이에 따라 출자금의 지분가치도 또한 정관 제20조 1항에 따라 투자된 설비들의 감가상각비율에 따라 감소된다.

울산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

본 규약은 총회 통과가 되는 즉시 발효된다.